

제 1650 호

전라남도보

서기 1985 년 3 월 18 일

발행인
전라남도지사
발행소: 광주시 광산동 13
전라남도문화공보담당관실
우편번호 500

목 차

1. 전라남도 훈령 제 661 호 전라남도 내부위임 규정중 개정
2. " 고시 제 38 호 식품접객 영업허가 제한해제지역 지정
 제 39 호 광주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
 제 40 호 광주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인가
3. " 공고 제 89 호 의료보호 시설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제 90 호 양식어업 면허처분
 제 91 호 관인 개각
 제 92 호 '85 년도 간호보조원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제 93 호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
 제 94 호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
 제 95 호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
 제 96 호 전라남도 미술대전 조례 개정 조례안 예고문
 제 97 호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신청

4. 사 령

호								
람								

-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 도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비치용 도보는 5 년이상 보관한다.

훈 령

전라남도 내부위임 규정중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5. 3. 13.

전 라 남 도 지 사 전 석 홍

전라남도 훈령 제 661 호

전라남도 내부위임 규정중 개정안

제 2 조 (위임사항) 별표중 치수과소관 위임사무 제 5 호 다음에 제 6 호 및 제 7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위 임 사 무 명	근거 및 적용범위	수 임 기 관
치 수 과	6. 공유수면관리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지역 내의 공유수면을 해수욕 장으로 사용하는 구역의 지정고시	○ 전라남도 하천 공유 수면 점용료 및 사 용료 징수조례 제 6 조 제 1 항	시장, 군수, 여천지구출장소장
	7. 고시된 해수욕장 부지에 대한 점용료의 결정	같은 조례 제 8 조 제 6 항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全羅南道 告示 第 38 號

保健社會部 告示 第 84 ~ 84 號 (84.12.4) 에 依據 食品接客營業 許可
制限 解除地域을 다음과 같이 告示한다.

1985. 3. 9.

全 羅 南 道 知 事 全 錫 洪

食品營業許可基準中 營業許可制限 解除地域 指定告示

第 1 條 (目的) 이 告示는 保健社會部 告示 第 84 ~ 84 號 (84.12.4) 第
2 條 第 5 號의 規定에 依據 食品接客營業의 許可制限 解除地域을 指
定 管理하므로서 均衡있는 地域發展과 健全한 社會風土 造成을 目的
으로 한다.

第 2 條 (告示適用業種) 本告示 適用對策業種은 다음과 같다.

1. 遊興飲食店 營業
2. 簡易酒店
3. 專門飲食店 營業
4. 大衆飲食店 營業中 인삼찜집 영업

第3條 (營業許可制限地域解除) ① 第2條 各號의 適用對象業種中 다음

各號에 該當하는 地域內에서는 新規許可를 할 수 있다.

1. 觀光事業法 第46條의 規定에 依한 觀光地

2. 國土利用 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한 觀光休養地域

3. 觀光호텔內 附帶施設

4. 市長·郡守 및 道出張所長이 地域의 特殊性 또는 都市의 均衡있
는 發展과 公益上的 必要를 勘案하여 市郡政 諮問委員會 全體會
議 및 道廳川出張所 行政諮問委員會 議決을 거쳐 一部營業許可를
制限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한 地域

② 다만, 第1項 各號에 該當하는 地域內에서 營業을 하고자 하는
경우 環境 1436 ~ 713 (82.8.6) 號 “食品接客業所 衛生施設 改善指
針”에 該當하는 項目의 施設에 對하여는 同基準을 適用하고 廚房을
開放하여야 한다.

第4條 (既存業所에 對한 措置) 이 告示 施行以前에 第2條 各號의 營
業許可를 得하여 營業을 하여 오던者가 同營業의 場所를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告示의 適用을 받는다.

附 則

이 告示는 1985 年 3 月 9 日부터 施行한다.

전라남도 고시 제 39 호

광주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0 조, 제 12 조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를 광주시청 및 관할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5. 3. 15.

전 라 남 도 지 사

○ 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연 장	면 적	시 점	종 점	비 고
당 초	중로	3	22	12 m	1,350m	16,200 ^{m²}	대 1 - 3 방 립 동	광 15 봉주동	
변 경	중로	3	22	12	1,350	16,200	//	//	선형일 부변경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 게재 생략). 끝.

전라남도 고시 제 40 호

광주 도시계획 사업 (도로)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0 조 및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 이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광주시청 및 관할구청,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5. 3. 15.

전 라 남 도 지 사

(실시계획 인가사항)

1. 사업의 시행지

구 분	위 치	비 고
대 1 - 6 (구장성선)	광주시 북구 운암동 351-31 번지선	
중 3 - 22	광주시 서구 방림동 345 - 2 번지선	
소 3 - 20	광주시 서구 서 동 35 - 17 번지선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광주 도시계획 사업
- 명칭 : 도로 (대 1 - 6 , 중 3 - 22 , 소 3 - 20) 일부 확장 및 개설

3.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사 업 규 모	비 고
중 3 - 22	$L = 150\ m$ $B = 12\ m$	
대 1 - 6	$L = 365\ m$ $B = 35\ m$	
소 3 - 20	$L = 134\ m$ $B = 6\ m$	

4. 사업 시행자 주소 성명 : 광주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 85.3 인가일

○ 준공 : 85.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명세 (소유권 이외 권리 포함)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도면 기재 생략). 끝.

토 지 조 서												
〈대로 1류 6호선〉												
번 호	소 재 지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실 제 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및내용	
1	운 암	307.2	도 로	216㎡	43㎡	도 로	국(건설부)	—	×			
2	〃	1187.2	〃	2,281	456	〃	국(재무부)	—	×			
3	〃	357.1	〃	1,630	82	〃	국(건설부)	—	×			
4	〃	356.1	〃	93	93	〃	국(건설부)	—	×			
5	〃	307.5	〃	13	13	〃	국	—	×			
6	〃	355.4	〃	36	36	〃	국(재무부)	—	×			
7	〃	357.2	대	10,433	542	대	尹 玉 鉉	중흥 330-20	서울 중구 을 지로 2 가 36-2	근 저 당		
8	〃	356.3	도 로	79	18	도 로	佐 古 周 榮	수기 15	×			
9	〃	352.1	〃	83	4	〃	國 田 貴 相	운암 293	×			
10	〃	352.8	대	132	16	대	金 鎮 鶴 朴 永 奎	운암 352-8 운암 352-8	×			

번 호	소 재 지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실 제 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및내용	
11	운 암	352-7	대	246 m ²	246 m ²	대 도 로	崔 光 明	운암 352-7	×			
12	//	353-1	도 로	79	79		趙 萬 善	수기 80	×			
13	//	352-2	//	910	910	//	崔 東 雲	주월 1201-2	×			
14	//	351-3	답	1,620	376	대	白 裕 寅	금남 5 가 59	×			
15	//	352-10	대	26	26	//	朴 龍 來	금남 5 가 91	×			
16	//	351-5	답	43	43	//	光 州 市	—	×			
17	//	334-3	대	248	248	대	李化一외 9	운암 987	×			
18	//	351-4	도 로	3	3	도 로	白 裕 寅	금남 5 가 59	×			
					3,234 m ²							

<대로1류6호선>

번 호	소 재 지		물 전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및내용	
1	운 암	352-7	점포및주택	연와세와	80.6 m ²	점포및주택	최 광 명	운암 352.7	×			
		//	까 데 기	세부스레트	21.2 m ²	점포및부엌	//	//	×			
		//	//	//	8.0 m ²	부 엌	//	//	×			
		//	점포및주택	//	61.6 m ²	점포및부엌	//	//	×			
		//	창고및변소	//	13.6 m ²	창고및변소	//	//	×			
		//	담 장	세멘부력	8.2 m		//	//	×			
		//	//	연와블럭	3.2 m		//	//	×			
		//	펌 프	모와·수동	1 식		//	//	×			
		//	수 도		1 기		//	//	×			
		//	전 화	55-2419	1 대		//	//	×			
		//	//	54-1433	1 대		박 모 순	//	×			
		//	//	54-4083	1 대		최 영 애	//	×			
2	운 암	//	점포및주택	연 와 세 와	13.6 m ²	점포및주택	김 진 학	운암 352.8	×			
		//	까 데 기	세부스레트	10.1 m ²	점포및부엌	//	//	×			
		//	물치및변소	//	3.0 m ²	물치및변소	//	//	×			
		//	담 장	세 멘 부 력	2.0 m		//	//	×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3	운암	357-2	사무실	세부아연	104.3 m ²	사무실	윤옥현	중흥 330-20	×			
		〃	변소	세부스레트	5.0 m ²	변소		〃				
		〃	수위실	세부스레트	6.0 m ²	수위실		〃				
		〃	매점	세부스레트	21.0 m ²	매점		〃				
		〃	창고	연와스레트	26.6 m ²		윤옥현	〃	×			
		〃	대문	연와부력 철제	6 m		〃	〃	×			
		〃	담장	세멘부력	41.6 m		〃	〃	×			
		〃	안내판	철제 지주관 L=7. H=6m	1 식		〃	〃	×			
		〃	향나무	약 20년생	3 주		〃	〃	×			
		〃	영산홍	약 10년생	4		〃	〃	×			
		〃	평평이	〃	1		〃	〃	×			
		〃	종려	〃	2		〃	〃	×			
		〃	옥향	〃	7		〃	〃	×			
		〃	회양목	〃	8.5 m		〃	〃	×			
		〃	철쭉	〃	1 주		〃	〃	×			
		〃	옥향	약 5년생	1		〃	〃	×			

번 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및내용	
3	운암	357-2	회 양 목	약 5 년 생	3 m		윤 옥 현	중흥 330-20	×			
		"	향 나 무	약 15 년 생	1 주		"	"	×			
		"	유 카	약 20 년 생	1		"	"	×			
		"	히 말 라 야	"	1		"	"	×			
		"	향 나 무	약 10 년 생	49 주		"	"	×			
		"	은 행	약 15 년 생	2 주		"	"	×			
		"	히 말 라 야	"	2		"	"	×			
		"	메 타 세 고	"	2		"	"	×			
		"	히 말 라 야	약 20 년 생	3 주		"	"	×			
		"	유 카	약 10 년 생	5 주		"	"	×			
8	"	"	회 양 목	"	1		"	"	×			
9	"	"	히 말 라 야	약 20 년 생	3		"	"	×			
		"	유 카	약 10 년 생	8		"	"	×			
10	"	"	축 백	약 5 년 생	4		"	"	×			
		"	향 나 무	약 20 년 생	3		"	"	×			
		"	금 련 백	약 10 년 생	1		"	"	×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번지	종	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3	운암	357-2	목	련	약 10 년 생	1		윤 옥 현	중흥 330-20	×			
			단	풍	약 7 년 생	1		"	"	×			
			철	죽	약 10 년 생	5 주		"	"	×			
			목	단	약 5 년 생	2 주		"	"	×			
			옥	향	약 10 년 생	23 주		"	"	×			
		334-3	비	석	부대 시설 포함	1 식		이화일의 9	운암 987	×			

〈중로 3류 22 호선〉

번 호	소재지		지목	지척	면적	입상	실제상황	소유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1	방림	345-3	전	1,074 m ²	5 m ²	전	朴興燮의 5	방림 471-10	×				
2	"	346-2	대	185	1	대	申京植	보성. 보성읍 옥평리 841	×				
3	"	364	"	119	115	"	沈載權	행암 91	×				
4	"	363	"	89	89	"	崔凡熙	방림. 363	×				
5	"	361	전	862	113	"	崔凡熙	학 363	三星電子工業(株)	수읍. 매탄동 416	근저당 지상권		
6	"	362	대	393	189	"	黃準植	산수. 463	×				
7	"	346.6	"	93	3	"	洪起準	방림 346-6	×				
8	"	346.7	"	126	21	"	金官浩	해남. 황산. 한자리 1047	×				
9	"	348.6	답	215	40	제과 공장	朴日權	방림 .436-6	(株)大韓相互信用金庫	누문동 59	근저당 지상권	도로12 도로 10	m ²
10	"	348.5	도 로	724	457	전	朴永昊	서석. 54-2	×				
11	"	348-3	답	802	147	"	田三平의 3	방림. 340	×				
12	"	348-7	"	197	27	"	朴竣範	서석. 54-2	×				
13	"	348-13	"	155	32	"	朴善淑	"	×				
14	"	348-14	"	185	50	"	朴賢淑	"	×				
15	"	352-3	"	324	122	고물상	田三平	방림. 340	(株)大韓相互信用金庫	누문 59	근저당 지상권		
16	"	517-2	도 로	3,605	183	도 로	國(건설부)		×				

〈중로 3류 22 호선〉

번호	소재지		물건의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실제이용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1	방림	364	주택	목조스레트	52.0 m ²	주택	심재권	행암동 91				
		"	가대기	목조및세부스레트	7.5 m ²	부엌	"	"				
		"	변소	세부스레트	2.3 m ²		"	"				
		"	담장	세멘부력	16.0 m		"	"				
		"	대문	목제 1.8 m	1 신		"	"				
		"	우물	석축 7 m	1 신		"	"				
2	방림	361 363	주택	연와세와	35.2 m ²	주택	최봉희	방림동 363	정재진 최인우	방림동 361 방림동 363	건축물대장 상소유자	
		"	창고및부엌	세부스레트	13.8 m ²	창고및부엌	"	"	"	"	"	
		"	주택	목조스레트	34.1 m ²	주택	"	"	"	"	"	
		"	공장	목선라이트	6.0 m ²	공장	"	"	"	"	"	
		"	창고	연와아연	2.8 m ²	창고	"	"	"	"	"	
		"	변소	세부스레트	1.4 m ²		"	"	"	"	"	
		"	물치	세부및연화아연	3 m ²		"	"	"	"	"	
		"	담장	적벽돌	9.8 m ²		"	"	"	"	"	
		"	대문	목제 1.2 m	1 식		"	"	"	"	"	
		"	석류	약 50 년생	1 주		"	"	"	"	"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2	방림	361 363	황금편백	약10년생	12주		최봉희	방림동 363	정재진	방림동 361 방림동 363	건축물대장 상소유자	
		//	백정화	약7년생	30주			//	//	//	//	
		//	금사철	약10년생	1주			//	//	//	//	
		//	수도		1기			//	//	//	//	
		//	기계시설	연삭기 1 채단기 1	1식		김산웅	//	×			
		//	전화	68-8957	1대		천선옥	//	×			
3	방림	362	주택	목조아연	10.8㎡	방및마루	황준식	산수동 463	×			
		//	//	세부스레트	30.2㎡	방및부엌	//	//	×			
		//	주택및점포	목조세와	26.6㎡	주택및점포	//	//	×			
		//	담장	세멘부력	21.4m		//	//	×			
		//	대문	철제 2.1m	1식		//	//	×			
		//	무화과	약6년생	1주		//	//	×			
		//	장미	//	1주		//	//	×			
		//	관상수	//	1주		//	//	×			
		//	소나무	//	1주		//	//	×			
		//	우물	석축 7m	1식		//	//	×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방림	362	수도		1기		황준식	산수동	×			
		//	전화	68-8550	1대		//	//	×			
		//	공중전화	618-348	1대		김병룡	방림동362	×			
4	방림	346-6	변소	연와 및 까부스라브	2.1㎡		홍기준	방림동346-6	×			
		//	대문	철제 1.4m	1식		//	//	×			
5	방림	346-7	변소및창고	세부스레트	6.0㎡		조길암	방림동346-7	김관호	해남.황산면 한사리 1047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	까대기	세부스레트	8.7㎡		//	//	//	//	//	
		//	대문	철제 1.4m	1식		//	//	//	//	//	
6	방림	348-6	공장	세부스레트	18.0㎡	제치 공장 및 변소	박일권	방림동348-6	×			
		//	기계시설	튀김솔 등 5건	1식		//	//	×			
7	방림	352-3	창고	세부스레트	5.4㎡	연탄창고			×			
		//	변소	//	0.6㎡		전삼평	방림동 340	×			
8	방림	346-2	담장	세멘부력	2.0m		신경식	보성.보성읍 옥평리 842	×			
				이		하	여	백				

〈소로 3 류 20 호선〉

번 호	소 재 지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실 제 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및내용	
1	서	126-2	대	30 m ²	21 m ²	도 로	光州市		×			
2	//	125-3	//	50	1	//	財團法人韓國 예수敎傳道館 維持財團	부천군소사읍 소사리 297-1	×			
3	//	126-11	//	26	5	대	程 燭 區	구동 37-12	×			
4	//	126-7	//	109	62	//	孫 守 鉉	서동 126	×			
5	//	126-3	//	873	4	//	財團法人韓國 예수敎傳道館 維持財團	천군소사읍 소사리 297-1	×			
6	//	121-1	전	1,501	318	대지및 도 로	財團法人韓國 예수敎傳道館 維持財團	부천군소사읍 소사리 297-1	×			도 로 15 m ²
7	//	121-2	대	215	44	//	金 漢 泰	월산동 321-4	×			도 로 8 m ²
8	//	119-4	도 로	241	4 4	도 로	李 東 憲	대인동 25	×			
9	//	119-5	대	145	1	대	全 佶 永	서동 119	×			
10	//	119-1	//	73	12	//	朴 士 權	서동 119-1	×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11	서	120-3	대	142 m ²	6m ²	대	朱 文 甲	서동 120-3	×			건물 공동
12	//	36-5	묘, 지	228	89	도로	金 官 億	서동 90	×			
13	//	36-4	대	142	1	대	李 完 相	서동 36-4	(株)昌系相互信用金庫(남부지점)	금남 4 가 53	근저당	
14	//	35-5	//	53	22	//	洪 南 基	서동 35-5	朴 昭 子	서동 63-1	가등기	
15	//	35-8	//	162	68 1	//	金 相 坤	서동 35-8	×			
16	//	35-6	//	241	166	//	金 丙 鍊	서동 35-6	×			
17	//	35-13	//	33	4	//	金 敦 洙	충장 4 가 30-10	×			
					833m ²	이	하	여	백			

〈소로 3 류 20 호선〉

번 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 번	종	류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및내용	
1	서	126-11	주	택	세 부세 와	7.4 m ²	주	택	정 선 거	서동 126.11	×		
2	서	121-2	종	탑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4층	88.2 m ²	현관및종탑	채단법인한국 예주교전도관 유지재단	경기 부천시 소사읍소사리 297-2	×			
		126-3								×			
		〃	교	회	1층 2층	58.5 m ² 58.5 m ²	교 회	〃	〃	×			
		〃	변	소	세부스레트	9.1 m ²	변 소	〃	〃	×			
		〃			〃	6.3 m ²	〃	〃	〃	×			
		〃	주	택	〃	20.3 m ²	주	택	〃	×			
		〃	물	치	〃	2.5 m ²	물	치	〃	×			
		〃	까	데 기	베 니 아 선 라이트	1.8 m ²	보 일 러 실	〃	〃	×			
		〃	주	택	목조스레트	3.6 m ²	주	택	〃	×			
		〃	까	데 기	〃	3.1 m ²	마	루	〃	×			
		〃	담	장	세 멘 부 력	45.5 m	담	장	〃	×			
		〃	금	목 서	약 10 년 생	2 주	정 원 수	〃	〃	×			
		〃	전	나 무	15 〃	7 주	〃	〃	〃	×			
		〃	모	과	15 〃	1 주	〃	〃	〃	×			
		〃	히	말 라 야	25 〃	1 주	〃	〃	〃	×			
		〃	청	목	10 〃	1 주	〃	〃	〃	×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격	수 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및내용	
2	서	121-1 126-3	포 도	약 10 년 생	1 주	정 원 수	대한법인한국 예수교전도관 유지재단	경기 부천시 사 소사리 297-1	×			
		"	장 미	5 "	5 주	"	"	"	×			
		"	개 나 리	5 "	1 주	"	"	"	×			
		"	무 궁 화	5 "	3 주	"	"	"	×			
		"	무 화 과	20 "	3 주	"	"	"	×			
		"	포 도	10 "	1 주	"	"	"	×			
		"	감 나 무	20 "	1 주	"	"	"	×			
		"	"	5 "	2 주	"	"	"	×			
3	서	126-7	주택및점포	목 조 세 와	44.4 m ²	주택및점포	손 수 현	서동 126-7	×			
		"	부 역	"	1.0 m ²	부 역	"	"	×			
		"	변소및창고	세부스라브	5.4 m ²	변소및창고	"	"	×			
		"	담 장	세 조 부 립 및 직	2.7 m		"	"	×			
		"	대 문	철제 1.5m	1 식		"	"	×			
		"	수 도		1 기		"	"	×			
4	서	119-5	주택및변소	세부스레트	23.4 m ²	주택및변소	전 길 영	서동 119-5	×			
5	서	119-1	주 택	연 와 세 와	6.3 m ²	주 택	박 사 권	서동 119-1	×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5	서	119-1	문간밧변소	세부스라브	11.2 m ²	문간 밧변소 및 목욕탕	박사권	서동 119-1	×			
6	서	120-3	주택	//	9.0 m ²	주택	주문갑	서동 120-3	×			
		//	창고	//	3.1 m ²	창고	//	//	×			
		//	문간밧변소	//	3.4 m ²	문간밧변소	//	//	×			
7	서	121-2	//	//	3.4 m ²	//	김한태	서동 121-2	×			
		//	담장	세멘부력	14.0 m		//	//	×			
		//	향나무	약 10년생	1 주		//	//	×			
		//	대추	3 //	1 주		//	//	×			
8	서	35-5	주택	목조세와	11.8 m ²	주택	홍남기	서동 35-5	×			
		//	창고밧변소	세부스라브	1.8 m ²	창고밧변소	//	//	×			
		//	대문	철제 1.2 m	1 식		//	//	×			
		//	담장	세멘부력	6.3 m		//	//	×			
		//	수도		1 기		//	//	×			
9	서	36-4	담장	세멘부력	1.8 m		이완상	서동 36-4	×			
10	서	35-8	주택	연와세와	22.5 m ²	주택	김상곤	서동 35-8	×			
		//	까데기	세선라이트	7.0 m ²	부엌	//	//	×			

번 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및내용	
10	서	35-8	주택및문간	25.5	25.5 m ²	주택. 문간 및 변소	김 상 곤	서동 35-8	×			
		//	창 고	1.5	1.5 m ²	창고및계단	//	//	×			
		//	물 탱 크	세멘콘크리트 (1.4×1.4)	1 식		//	//	×			
		//	살 구	약 5 년 생	1 주		//	//	×			
		//	목 련	//	2		//	//	×			
		//	석 류	약 10 년 생	1		//	//	×			
		//	자 두	//	1		//	//	×			
		//	영 산 홍	//	2		//	//	×			
		//	철 쪽	//	1		//	//	×			
		//	백 일 홍	//	1		//	//	×			
		//	매 조	//	1		//	//	×			
		//	개 나 리	//	1		//	//	×			
		//	수 도		1 기		//	//				
11	서	35.6	주 택	목조세와	56.8 m ²	주 택	김 병 연	서동 35-6				
		//	까 데 기	//	13.7 m ²	부 역	//	//				

번호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상 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종류및내용	
11	서	35-6	주택및문간	연와세와	27.0 m ²	주택. 문간 및 변소	김 병 연	서동 35-6				
		〃	부 역	세부스레트	7.4 m ²	부 역	〃	〃				
		〃	창 목 고 옥 및 탕	세부스라브	9.9 m ²	창 목 고 옥 및 탕	〃	〃				
		〃	담 장	세멘부럭	21.6 m		〃	〃				
		〃	감 나 무	약 20 년 생	1 주		〃	〃				
		〃	〃	3 〃	1 〃		〃	〃				
		〃	향 나 무	7 〃	3 〃		〃	〃				
		〃	무 화 과	20 〃	1 〃		〃	〃				
		〃	〃	7 〃	1 〃		〃	〃				
		〃	동 백	10 〃	1 〃		〃	〃				
		〃	석 류	20 〃	1 〃		〃	〃				
		〃	측 백	10 〃	2 〃		〃	〃				
		〃	목 련	10 〃	1 〃		〃	〃				
		〃	감 나 무	15 〃	1 〃		〃	〃				
		〃	자 목 련	5 〃	1 〃		〃	〃				
		〃	감 나 무	5 〃	1 〃		〃	〃				

번 호	소 재 지		물 건 의 종 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종류및내용	
11	서	35-6	전 화	68-5019	1 기		김 병 연	서동 35-6				
			수 도		1 기		//	//				
12	서	35-13	변 소	세부스라브	4.0 m ²		김 돈 수	충장 4 가 30-10				

공 고

의료보호시설추가지정 및 지정취소공고

전남 공고 제 89 호

의료보호법 제 7 조, 동법 시행령 제 4 조 및 동 규칙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를 담당할 의료보호 시설을 별첨과 같이 추가 지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 8 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취소함을 공고함.

1985. 3. 12.

전 라 남 도 지 사

의 료 보 호 시 설 추 가 지 정 내 역						
진료내역	의 료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지정구분	지 정 일 자 및 취 소 일 자	비 고
광 주	정제옥치과의원	정 제 옥	광주시서구양동 307-26	1 차	85. 3. 12	신 규
"	최봉식피부과의원	최 봉 식	광주시동구궁동 7-11	"		"
"	이수옥소아과의원	이 수 옥	광주시북구운암동 928-2	"		"
장 흥	오재명의원	오 재 명	장흥군관산읍옥당리 426-4	"		"
순 천	양정규내과의원	양 정 규	순천시강천동 40-6	"		"
"	김한규정형외과의원	김 한 규	순천시풍덕동 937-11	"		"
광 양	조남기외과의원	조 남 기	광양군광양읍칠성리 530-3	"		"
의 료 보 호 시 설 지 정 취 소 내 역						
함 평	이종영외과의원	이 종 영	함평군함평읍내교리 209-9	2 차	85. 3. 12.	폐 업
장 흥	현저의원	최 종 록	장흥군관산읍옥당리 426-4	1 차	85. 3.	"
보 성	순천의원	정 문 석	보성군득량면예당리	1 차	85. 3.	"
함 평	해보의원	임 정 호	함평군문장리 822	1 차	85. 3.	"

전남공고 제 90 호

내수면 어업개발촉진법 제 7 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업 면허
를 처분하였기 수산업법시행령 제 10 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85. 3. 12.

전 라 남 도 지 사

○ 어업 면허 처분 내역

면허번호	어업권자주소	성 명	어업의종류	수면의위치	면 적	양 식 물	면 허 기 간
전남양식 제 54 호	무안, 무안, 성동 885	주철영	양식어업 (지수식)	현경, 현화	3,282	뱀 장 어	85.3.12- 95.3.11

전라남도 공고 제 91 호

장기간 사용으로 광주시장인이 마모되었기 폐인하고 다음과 같이 개각
사용 공고함.

1. 폐인 및 사용일시 85. 3. 1

2. 폐인 및 개각공인 내역

공인명	서체	규격	용도	구분	인영
광주시장인	한글전서	정방형	광주시청용	폐인	
〃	〃	〃	〃	개각	

1985. 3. 13.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공고 제 92 호

'85 년도 간호보조원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

'85 년도 간호보조원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및 자격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5. 3. 16.

전 라 남 도 지 사

1. 합격자 명단(번호) : 별지

2. 서류제출

가. 기 간 : '85.3.18 - 3.27.

나. 장 소 : 전라남도 서무과 고시계

다. 서류명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통

(2) 간호보조원 양성소 이수 증명서 1 통

(3) 건강 진단서 1 통 (시군구보건소장, 국공립병원장 발행)

(4) 신원증명서 1 통

3. 유의사항

가. 기한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제출서류에 응시자격 결격 사유가 있는자는 시험 자격을 취소한다.

나. 자격증은 '85.4.1 - 4.15 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 인장, 사진 2매 (응시원서에 붙인 동일사진)를 지참하여 본도 민원실에 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85 간호보조원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번호)

1	2	4	5	6	7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4	25
29	30	31	32	33	34	35	36	37	40
41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4	57	58	60	61	63	65	66	68
69	70	71	72	73	75	77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4	95	97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8	110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21	123	124	125	127	129	130	131	132
134	136	138	140	142	143	144	145	148	150
152	153	154	155	156	158	159	160	161	162
164	165	166	167	169	171	172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3	194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4	206	207	208	209	211	212
213	214	215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7	228	229	230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9	260	261	262	263	265	266	267	269
270	271	273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8	309	310	311	313	315
317	319	320	322	323	325	326	327	329	330
331	333	334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6	351	352	354	355	356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2	373	375	378	380	381	382	384	386
387	388	389	390	395	396	397	399	400	401
402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7	438	439	440	441	442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2	486	487	488	490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6	547	550
553	554	555	557	558	559	560	561	563	564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2	583	584	585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8

609	610	611	612	613	615	616	617	618	619
622	624	625	626	627	630	632	633	635	636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8
649	651	652	653	654	655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7	679	680	681	682	683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5	696	698	699
701	702	703	704	705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5	716	718	719	721	723	724	726
727	728	729	731	733	734	737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6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1	773	774	775
776	777	780	782	783	785	786	790	791	792
793	794	795	797	798	799	800	801	802	806
807	808	809	811	812	813	816	818	819	820
822	824	825	827	828	829	831	832	834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5	866	867	869	873	875	876
877	878	880	881	882	883	884	886	887	888
889	891	892	893	894	896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7	908	910	912	915	916	918
919	921	922	923	924	927	929	932	933	935
937	939	940	947	949	950	951 (이상 737명)			

전남 공고 제 93 호

수산업법 제 1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85. 3. 15.

전 라 남 도 지 사

○ 어업권 연장 허가 내역

면허번호	양식물	어업권자주소	성명	어장위치	면적	연장기간	비고
여수양식 제 25 호	홍합	여천, 돌산, 평 사 1098	유창주	여수, 경호동	150,000㎡	85.4.15 - 92.4.14	
" 제 29 호	홍합	" 1174	장병순	"	38,000㎡	"	
" 제 425 호	고막	여천, 화양, 이 천 141	어촌계 대표 이순철	화양, 오천	72,000㎡	85.3.17 - 95.3.16	
" 제 429 호	피조개	여천, 화정, 백 야 404	고영로	화양, 용주	50,000㎡	85.3.14 - 95.3.23	
" 제 434 호	새고막	여천, 소라, 사 곡 783	허영진	울촌, 봉전	60,000㎡	85.3.28 - 95.3.27	
" 제 440 호	"	"	"	화정, 여자	100,000㎡	85.4.4 - 95.4.3	

전남 공고 제 94 호

수산업법 제 1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85. 3. 15.

전라남도지사

면허번호	양식물	어업권자주소	성명	어장위치	면적	연장기간	비고
해남양식 제 52 호	반지락	해남, 황산, 한 자 450	어촌계 대표 송남태	황산, 산소	42,300 m^2	85.3.24- 91.3.23	
" 제 58 호	굴	해남, 북평, 이 진 149	최춘광	북평, 이진	51,800 m^2	85.3.27- 91.3.26	
" 제 53 호	반지락	해남, 북평, 이 진 407	어촌계장 김광용	황산, 산소	36,000 m^2	85.3.24- 91.3.24	

전남 공고 제 95 호

수산업법 제 1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하였기 동법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85. 3. 15.

전 라 남 도 지 사

면허기간	양식물	어업권자주소	성 명	어장위치	면 적	연장기간	비고
영광양식 제 29 호	백 합	신안, 진도, 대 초 795	이기남	홍농, 칠곡	m ² 149,400	85.3.25 - 95.3.20	
// 제 28 호	//	광양, 골약, 태 인 1337	황종인 외 3	백수, 구수	m ² 425,000	//	

전라남도 미술대전 조례개정 조례안 예고문

전라남도 공고 제 96 호

전라남도 미술대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85 년 3 월 18 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조례 제명

전라남도 미술대전 조례 개정 조례안

2. 개정 취지

본도 주관으로 개최 하여온 “전라남도 미술대전”을 예술문화 단체인 예총 전라남도지부에 이관함으로써 미술문화가 민간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향상 발전되도록 함에 있음.

3. 개정의 주요 내용

가. 도 주관으로 개최하던 “전라남도 미술대전”을 도가 주최하고, 예총 전남도지부가 주관하도록 하되, 회장은 도지사가 겸임한다.

나. 미술대전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15인 이내) 를 둔다.

다. 입·특선 및 수상작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위원 30인 이내) 를 둔다.

라. 미술대전에 “ 한국화 ”, “ 양화 ”, “ 조각 ”, “ 공예 ”, “ 서예 ”, “ 사진 ”, “ 건축 ”, “ 사군자 ” 8개부를 둔다.

마. 출품자격은 전라남도 출신 및 전라남도내 거주자로 한다.

바. 미술대전 개최 요강을 작품 접수 개시일로부터 3개월전에 공고한다.

* 조례안 전문 별첨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985년 4월 7일까지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 (참조 : 문화공보담당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2-0011 (교환))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라남도 미술대전 조례 개정조례 (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미술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미술대전 (이하 “도전”이라 한다)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개최) ① 도전은 매년 4월부터 6월중에 개최한다.

② 도전을 개최할 때에는 회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출품원서 접수 개시일 3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작품의 규격
2. 작품의 출품수 및 출품료
3.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 (도전 사무소)
4. 작품의 전시기간, 장소 및 관람료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 3 조 (주최 및 주관) ① 도전은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예총도지부가 이를 관장한다.

② 도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 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예총 도지부장은 도전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4 조 (조직) ① 도전은 회장, 부회장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 회장은 도지사, 부회장은 예총 도지부장, 간사는 예총도지부 사무국장이다.

③ 회장은 도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④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도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 5 조 (운영위원회등) ① 회장은 도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이하 “ 운영위원회 ” 라 한다) 와 전라남도 미술대전 심사위원회 (이하 “ 심사위원회 ” 라 한다) 를 매년 구성한다. 각 위원회는 그 해의 도전 업무가 종료하면 자동 해산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1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도전 부회장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 인을 포함하여 3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6 조 (부문) 도전에 다음의 부를 둔다.

① 제 1 부 한국화

② 제 2 부 양 화

③ 제 3 부 조 각

④ 제 4 부 공 예

⑤ 제 5 부 서 예

⑥ 제 6 부 사 진

⑦ 제 7 부 건 축

⑧ 제 8 부 사군자

제 7 조 (전시작품) ① 도전에 전시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선한 작품

2.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의 작품

3.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의 작품

② 제 1 항의 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작품의 전시는 1인당 1점에 한한다.

제 8 조 (추천작가) ①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의 추천작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전에서 4회 이상 특선한 사람

2. 도전에서 10회 이상 입선한 사람, 다만, 1회 이상 특선하여야 한다.

3. 도전 입선작가로서 대한민국 미술대전 (이하 “국전”이라 한다)에서 3회 이상 특선하거나 10회 이상 입선한 사람

② 추천작가의 지정은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다.

제 9 조 (초대작가) ①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의 초대작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추천작가로서 계속 5회 이상 도전에 출품한 사람

2. 추천작가로서 총 8회 이상 도전에 출품한 사람

3. 국전의 초대작가 또는 추천작가로서 도전 심사위원을 역임한 사람

4. 국전 및 도전의 초대작가 또는 추천작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도전 심사위원을 5회 이상 역임한 사람

② 초대작가의 지정은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다.

제 10 조 (촬영등의 제한) 도전에 출품된 작품을 촬영 또는 모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출품인의 자격) ① 도전에 작품을 출품할 수 있는 사람은 전라남도 출신 및 전라남도에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② 작품의 제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가족이 출품할 수 있다.

제 12 조 (출품범위) ① 도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작품이어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 발표된 작품
 2. 다른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인정되는 작품
 3. 공서 양속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작품
 4.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작품
- ② 같은 사람이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범위는 제 6 조에 규정한 각 부에 대하여 매부마다 1점에 한한다.

제 13 조 (작품의 규격) ① 도전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의 규격은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회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작품의 규격을 정한 때에는 제 2 조 제 2 항에 의하여 도전 개최 공고를 할때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출품원서) ① 도전에 작품을 출품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작품과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출품원서를 도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작품에는 매점마다 명제, 제작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출품표를 붙여야 한다.

③ 도전 사무소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출품 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작품의 훼손 유무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출품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15 조 (출품료) ① 회장은 도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품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출품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제 2 조 제 2 항에 의하여 도전 개최 공고를 할때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낙선작품의 반품) ① 출품인은 그 작품이 도전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낙선된 때에는 그 심사결과와 발표일로부터 5일이내에 되돌려 가야 한다.

② 회장은 제 1 항의 기간내에 되돌려 가지 아니한 작품에 대하여는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7 조 (전시위치) 도전에 전시하는 작품의 전시위치 및 배열은 운영위원장이 정하며, 출품인은 이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옥외 전시장을 활용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18 조 (반출금지)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출품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하며, 전시할 작품은 회기 종료전에는 이를 반출하지 못한다.

제 19 조 (입·특선 및 수상작품) ① 입선된 작품중 우수작품을 특선작품으로 하고, 특선된 작품중 우수작품을 수상작품으로 한다.

② 입·특선 작품 및 수상작품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회장이 결정한다.

③ 입·특선 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 4 호 서식에 의한 입·특선작을 수여하고, 수상작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 5 호 서식에 의한 상장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제 20 조 (관람) ① 도전에 전시된 작품은 공개 관람하게 한다.

② 관람시간은 행정기관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시킬 수 있다.

③ 회장은 전시장의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1 조 (관람료) ① 회장은 전시품의 관람인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관람료의 징수 결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관람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제 2 조 제 2 항에 의하여 도전 개최 공고를 할때에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 22 조 (보고 및 기록보존) ① 예충도지부장은 도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도자사에게 도전 개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 및 예충도지부에서는 다음 사항을 영구히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별지 제 6 호 서식 및 제 6 - 1 호 서식)

2. 입선 및 특선자 대상 (별지 제 7 호 서식)

3.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 8 호 서식)

제 23 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초대작가 및 추천작가는 이 조례 제 8 조 및 제 9 조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 1호 서식)

전라남도 미술대전 출품원서

부 문 :

No

출 품 자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적	연락처 (전화)		
	주소	직장 : 자택 :		

작 품 명 제	한글	출 품 심 사 위 원 작 품 초 대 작 가 추 천 작 가 일 반 공 모 자	작 품 규 격
	한문		
	영문		
명제설명			

1. 본인은 제 회 전라남도 미술대전에 출품함에 있어서 전라남도 미술대전 조례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출품합니다.
2. 작품 반·출입에 대하여 소정기일내에 작품을 반출하지 않을시는 상호 약정에 의거 작품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19 년 월 일

출원인

①

전라남도 미술대전 운영위원장 귀하

(유의사항)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정확히 정자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출품작품은 소정기간 (낙선작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5일이내, 전시작품은 전시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이내)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약정서를 제출치 않을시는 작품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 출품자는 소정기일내에 출품원서와 작품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품기일이 경과한 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 2 호 서식)

19 년도

출 품 표	접 수 번 호
부문 : 명제 (한글) (한문) 작가 : 성명 (한글) (한문) 작품 취급상의 유의사항	

접 수 증	반 출 증
부 문 : 접수 제 호 작품 명제 작가 성명 위의 작품을 접수함 19 전라남도 미술대전 운영위원장 ㉠	접수 제 호 부 문 : 작가명 : 작품명 : 위 작품의 반출을 허가함. 19 전라남도 미술대전담당 ㉠

- ※ ○ 출품작품을 찾아가실 때에는 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 및 인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출품작품을 소정기간 (낙선작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5일이내, 전시 작품은 전시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이내)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출품작품에는 배부된 출품표에 명제, 작가성명, 작품 취급상의 유의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매 작품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 3 호 서식)

추천 (초대) 작가 지정서

부 (주소)

(성명)

위 사람은 전라남도 미술대전 조례 제 8 조 (제 9 조) 의 규정에 의거
미술대전 추천 (초대) 작가로 지정되었기 이에 본 증서를 드립니다.

19 년 월 일

전라남도 미술대전 회장
전라남도지사

①

(별지 제 4 호 서식)

제 호

임 (특) 선 장

부 문 :

명 제 :

주 소 :

성 명 :

위 사람은 제 회 전라남도 미술대전에서 두서와 같이 선정되었
기 이에 임 (특) 선장을 드립니다.

19 년 월 일

전라남도 미술대전 회 장
전라남도 지 사

①인

(별지 제 5 호 서식)

제 호

상 장

명 제 :

주 소 :

성 명 :

위 사람은 제 회 전라남도 미술대전에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
기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19 년 월 일

전라남도 미술대전 회장
전라남도지사

인

(별지 제 6 호 서식)

전라남도 미술대전 심사위원 명단

위원회직책	부 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위)	비 고

(별지 제 6 - 1 호 서식)

전라남도 미술대전 운영위원 명단

위원회직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직위)	비 고

(별지 제 7 호 서식)

전라남도 미술대전 입선 및 특선자 대장

No	시 상 년 월 일	부 별	입선구분	명 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소)	비 고

(별지 제 8 호 서식)

전라남도 미술대전 추천 (초대) 작가 지정서 교부 대장

No	교 부 년 월 일	부 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적 (주소)	비 고

전남 공고 제 97 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신청 공고 (안)

주택건설촉진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 대지조성, 임대주택건설) 의 등록신청을 공고하니 다음에 의거 신청할 것.

1. 신청기간 : 85. 3. 28 ~ 4. 2 (5일간)
2. 등록장소 : 도청 주택과
3. 등록대상 : 주택건설, 대지조성, 임대주택건설 사업자
4. 등록기준 : 별도 배부
 - 해당 시·군에 문의
 - 도주택과 : 교환 22-0011 ~ 16
 - 광주·목포·여수·순천 - 주택과
 - 순천·금성 - 도시과
 - 각군 - 건설과

1985. 3. 18.

전라남도지사

훈 령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기 공고합니다.

성 명	신 임				현 임				비 고
	부 서	직 위	직 급	호봉	부 서	직 위	직 급	호봉	
조권현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민 방 위 국 비상대책과		청원경찰	5	
			이	하	여	백			

1985. 3. 4.

성 명	신 임				현 임				비 고
	부 서	직 위	직 급	호봉	부 서	직 위	직 급	호봉	
김우곤	금성시	시 장 직무대리	서기관		전라남도 금 성 시		서 기 관	30	
			이	하	여	백			

1985. 3. 11.

성 명	신 임				현 임				비 고
	부 서	직 위	직 급	호봉	부 서	직 위	직 급	호봉	
오시권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전라남도 금 성 시	시 장	부이사관	30	
			이	하	여	백			

1985. 3. 11.

성명	신임				현임				비고
	부서	직위	직급	호봉	부서	직위	직급	호봉	
유민봉	해남군	군수	서기관	26	화순군	군수	서기관		
이종무	화순군	"	"	24	보성군	"	"		
박선배	무안군	"	"	30	진도군	"	"		
조항규	영광군	"	"	26	신안군	"	"		
정원강	신안군	"	"	29	완도군	"	"		
이현호	광산군	"	"	28	고흥군	"	"		
장재필	장흥군	"	"	27	함평군	"	"		
			이	하	여	백			

1985. 3. 11.

성명	신임				현임				비고
	부서	직위	직급	호봉	부서	직위	직급	호봉	
박인출	내무부지 무를 명 3.18 ~	방행정연 합 (파견 별도 통지 기간 : 85. 까지)	수원파견 군	25	내무국 서무과		지방 부이사관	26	
이용호		"			"		지서 기관	27	
박준식		"			"		"	25	
김한동		"			"		"	24	
심성식		"			"		"	30	
			이	하	여	백			

1985. 3. 16.

전라남도지사